

2024 학술·문화행사 지원 사업요강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학술·문화행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학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학관련 학술·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발전을 지향하고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단체,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산문화재단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창립한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 한국문학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문화행사를 개최 및 운영하려는 단체나 개인

2. 신청자격

가. 단체의 경우, 대표와 회원의 성격,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단체

나. 개인의 경우, 전·현직, 업적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 * 특정 단체의 회원 중심의 연례 행사나 개인의 사적 성격의 행사는 배제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은 신청 불가함.

3. 지원 대상건수

- 상·하반기 각 0건

- * 지원 신청이 없거나 재단의 학술·문화행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의 행사가 신청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금

- 500만 원 이내

- * 지원금은 전체 행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 예산의 전액을 지원하지 않음.
- * 지원금은 인건비(강연료, 사회비, 토론비 등), 대관비, 기타 행사물품 제작비 등 주요 항목에 사용 가능함. 단체 및 개인의 필요로 인한 비품 구입, 상근자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사용은 불가함.

5. 접수 기간 및 방법

- 하반기(2024년 10월 이후 개최 예정 행사) : 8월 23일(금)까지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접수 방법 : 이메일(dh.jang@daesan.or.kr 담당자 : 장다희) 접수

- * 반드시 재단에 먼저 문의한 이후 접수 바랍니다.

- *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 서류

가. 학술·문화행사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소정 양식)

나.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다.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의 통장 사본

- *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이 부재한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임을 입증하는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하여야 함.

7. 지원 대상의 의무

- 가. 지원 대상 단체(개인)는 사업 시행 시 관련 인쇄물 및 기타 적절한 곳에 재단의 후원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 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개인)는 본 재단의 소정 양식에 의한 지원금 수령증(소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지원 대상 단체(개인)는 사업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의 내용을 상술한 결과보고서, 관련 인쇄물 및 사진,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8.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 하반기 : 9월 말 개별 통지
- * 지원금은 심의 과정을 통해 공익성, 효용성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하며, 관련 사항 확인 후 행사 시행 2~4주 전까지 지급함.

9. 문의처

- 전화 : (02)721-3202(담당자 : 장다희) | 팩스 : (02)725-5419 | 이메일 : dh.jang@daesan.or.kr |

10. 기타

- 가.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후 지원 대상 단체(개인)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지원금의 취소, 중단 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1)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2) 심의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 4) 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 5)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6) 지원 대상 단체(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 재단의 신용, 명예 또는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 7) 지원 대상 단체(개인)이 공공성,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 8) 기타 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나. 단체의 경우 이름, 조직 등이 바뀌어도 단체의 성격이나 회원들로 보아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함.
-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